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방역대책 회의(2022.1.14., 1.21.)
- 나.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체계 전국 확대방안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271호, 2022.1.26.)
- 다.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·치료체계 관련 조치사항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313호, 2022.1.26.)
- 라.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(보험급여과-500호, 2022.1.25.)

2.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 병·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,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 변경사항

- 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(적용기관) 확대
 - (기존) 오미크론 우세지역(광주·전남·평택·안성)의 호흡기전담클리닉
 - (변경)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(의료기관형)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
- ② 코로나19 확진검사(단독) 시행 관련,
 - '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,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의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'(고시 제2021-217호)에 대한 해석 변경
 - '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'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
 -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
 -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·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

□ 적용시기 : 2022.2.3.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
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2.4.부터 가능

붙임: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2. 1. 29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603 (2022. 1. 29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